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8871

제안연월일: 2025. 3.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964	백종헌의원	2024. 8. 20.	2024. 11. 14.
	6033	백혜련의원	2024. 11. 29.	2025. 1. 14.

-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 심사제1소위원회(2025. 2. 19.)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 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다.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5. 2. 21.)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 관련 경찰 신고 건수 및 상담 건수 등이 증가하는 등스토킹 피해자에게 보호와 심리치료·일상회복 등 지원이 필요함에도불구하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추가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허목 신설).

또한, 현행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하면서 관련 발급 수수료의 직접 충당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발급 수수료 수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하에 자격증 교부 등의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위탁사무의 안정을 기하고자 함(안 제11조제8항 신설).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제2조제1호 허목 신설).
- 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 도록 함(안 제11조제8항 신설).

법률 제 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허목을 고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제5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허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 · 선도 (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 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 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 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 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 퍼. (현행과 같음) 가. ~ 퍼. (생 략) 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신 설>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 (현행 허목과 같음) 허. (생략)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 ⑦ (생 략)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 <신 설>

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제5항에 따라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